

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6일
국토교통부장관

**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
세부평가기준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**

1. 개정이유

우리 부는 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」 및 시행령에 따라 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」을 고시·운영 중으로, 조달청 등 관계 부처, 건설 등 관련 분야 기준 및 외부 여건 변화를 반영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 요구 등에 따라 제도 운영 합리화를 통한 건전한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본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건축설계자 신용도 평가 시 입찰참가제한 기간에 따른 감점 규정 삭제
(안 별표 1 및 별표2, 별첨 부표 4.①)
- 나. 건축설계자 신용도 평가 시 반영되는 별점 범위 확대(안 별첨 부표 4.②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s://www.molit.go.kr>-정책자료-법령정보-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의견 및 이유)

개 정 안	수 정 안	이 유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·전화번호

다. 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정부세종청사 6동

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

- 전화: 044-201-3782·3778, 팩스: 044-201-5574